

국내·외 대학간 학점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31조에 의하여 국내·외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2. 본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이러닝 교과목(사이버 강의)으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자격) ①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은 1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서 수강신청 당시 지난 학기 성적 평균 평점이 2.5 이상이며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. 다만, 해당 교류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별도 적용할 수 있다.

② 사이버강좌의 학점교류는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격을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4조(신청 및 선발) ① 지원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갖추어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받되, 사이버강좌의 학점교류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(2020.2.25.개정)

제5조(의무) 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강신청) ①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 과목으로 한다.

② 수강신청학점은 학기당 최대 6학점 이내(계절학기는 학기당 6학점까지)로 졸업시까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③ 정규학기 교류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하며, 계절수업은 매학기 교내 신청 학점 수와 별개로 신청한다.

④ 국외대학 교환학생은 1년 동안 3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⑤ 학점교류학생이 교류기간에 소요되는 개인의 비용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.

제7조(학점인정) ①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100점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며, 본교의 성적처리기준에 따라 환산한다.

② 학점교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교무처장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인정하면 해당 학기 성적표에 기록하고,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임을 표기한다.

③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④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교양과목으로만 인정받는다. 단, 교류대학과 협약내용에 따라 이수구분은 달라질 수 있다.

제8조(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) ① 교류학생의 학생지도 및 관리는 본 대학과 교류대학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.

② 교류학생에 대해서는 본교 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복지시설 이용을 허락한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이나 관계 규정을 준용하

4-1-12 국내외 대학간 학점교류 인정에 관한 규정

고,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